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65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3
2.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연 1회로 변경(이인선의원안)	6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06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0.

(3) 회 부 일 : 2025. 11.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

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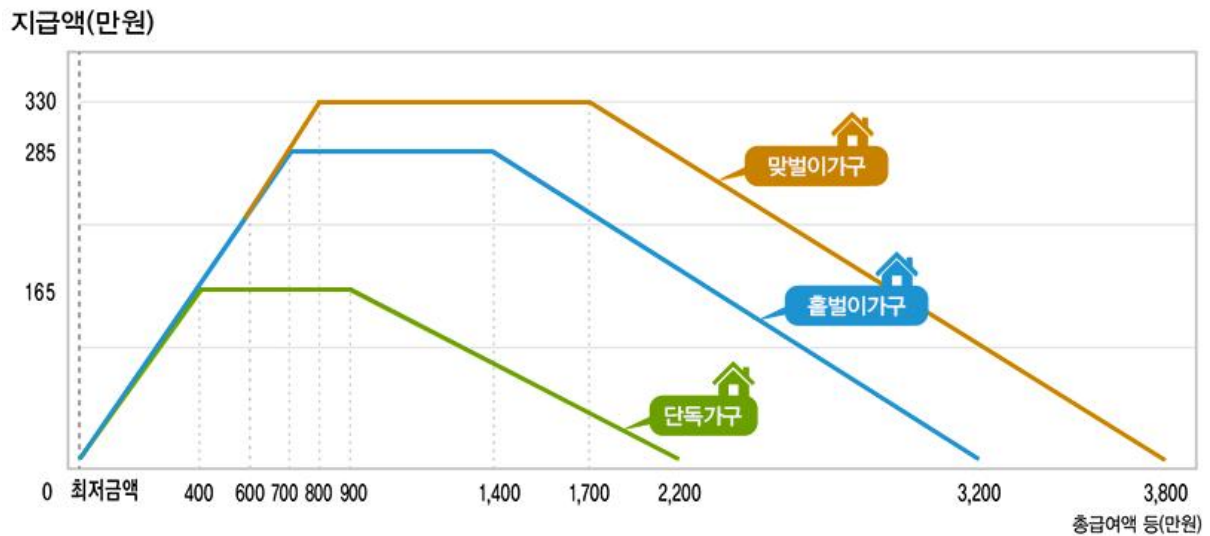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200만원(단독가구 기준)~3,8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기준)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¹⁾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짐.

근로장려금 산정 산식을 살펴보면, ① 일정 소득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고(점증구간; 그래프 우상향 구간), ② 그 후 최고지급액 구간에 이르면 지급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평탄구간; 그래프 수평구간), ③ 일정 소득 이상 구간에

1) 재산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의미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함

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감소하여(점감구간; 그래프 우하향 구간) ④ 소득상한구간에 이르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그래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식]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400~900만원	165만원	700~1,400만원	285만원	800~1,700만원	330만원
900~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1,400~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1,700~3,8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주)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는 약 404만 가구이고 총 지급액 규모는 4조 5,472억원으로, 최근 6년간 지급대상 가구와 총 지급액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

(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급 가구	166	179	410	432	426	442	426	410	404
지급액	11,967	13,381	45,049	44,683	44,732	44,871	47,254	45,636	45,472

주1. 귀속연도별 최종 지급현황

주2.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의 통계로서 조세감면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 국세통계포털 14-1-1.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지급현황

연도별 근로장려금 관련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조 3,381억원에서 2024년 4조 7,12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4조 6,581억원, 2026년에는 4조 5,7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8년	2019년 ¹⁾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13,381	49,256	44,826	46,035	45,036	47,281	47,122	46,581	45,760

주1: 지급금액 인상, 단독가구 연령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2019년부터 반기신청·지급 시행으로 2019년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 2019. 12월 조기지급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연 1회로 변경(이인선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제100조의6 등) ☐ 반기별 소득과약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에 따라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금액(제100조의5) - 상반기 소득분: 총지급액 × 0.35 - 하반기 소득분: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지급유보 요건(제100조의8) -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 삭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이인선의원안 2025. 11. 10. 제출(의안번호 14065)

☐ 개정안은 현행 신청에 따라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를 삭제하려는 내용임.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²⁾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지만³⁾,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는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⁴⁾.

□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기 지급제도의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득 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제도가 도입되었음.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당해연도 12월 30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에 근거하여 계산한 총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받았고, 당해연도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에 근거하여 산출한 총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받았으며,

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기 지급된 반기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산 및 환급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6월 말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9월 말에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져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재산 변동 등에 따라 정산 결과 장려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⁵⁾.

이에 근로장려금 반납에 따른 절차적 불편 및 심리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과 최종 정산이 6월 말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2021년 세법개정 전후 반기별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구 분		2021년 세법개정 이전			현 행		
		신청시기	지급시기	정산시기	신청시기	지급시기	정산시기
(정기) 근로장려금		다음해 5월	다음해 9월		(현행과 같음)		
반기별 근로장려금	상반기	9월	12월	다음해 9월	9월	12월	다음해 6월
	하반기	다음해 3월	다음해 6월		다음해 3월		

□ 개정안은 연 1회 지급하는 것과 달리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하반기 급여액의 차이로 인하여 이처럼 반기분을 지급

5) 2020년에 근로장려금 지급 후 환수된 가구는 9,757가구로, 전년의 근로장려금이 환수된 3,631가구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하였음(국회입법조사처, 「근로소득장려세제 현황과 과제」, 2021. 9.)

한 후 환수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으로 불편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산에 따른 민원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초래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실제 재정경제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총 196만 가구이며, 그 금액은 총 2조 2,312억원으로, 이 중 환수가 결정된 가구는 1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7.7%에 해당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501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2.2% 수준으로 매년 환수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발생 현황]

(단위: 만가구, 억원)

구분	반기 지급		환수 발생		환수		미환수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20	151	17,328	19	639	10	354	9	285
2021	183	18,963	27	1,347	12	589	15	759
2022	191	21,450	16	513	6	193	10	320
2023	192	21,800	15	504	4	135	11	369
2024	196	22,312	15	501	1	35	14	467

자료: 재정경제부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비해 지급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해당기간 이자비용만큼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구조적인 환수가 발생하는 문제와,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간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 유인 체감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당초 취지 및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기에 비해 지급 시기가 늦어져 이자비용만큼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삭제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7